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소비·유통 환경변화 대응 및 온라인 진출 기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온라인경제추진단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종전의 인력(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온라인경제추진단)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차관 밑에 온라인경제추진단장 1명을 둔다.

②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소상공인 온라인 국내외 진출 지원 기본계획 수립
2. 소상공인 1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운영
3.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거점 마련
4.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 지원
5.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채널별 입점 및 민간 채널 연계 지원
6. 신기술 연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비즈니스모델 개발·보급
7. 온·오프라인 연계 소상공인 판로 지원
8.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관련 통계·실태조사·분석, 성과관리 및 점

검

9. 우수 소상공인 제품 발굴 및 온라인 홍보·판매 지원

제11조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한다.

2. 혁신형 소상공인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3. 혁신형 소상공인 경영기법의 발굴·공유 지원

4. 혁신형 소상공인 비즈니스모델 개발·보급

5. 혁신형 소상공인 성과 확산

별표 4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6”을 “7”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9”를 “38”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온라인경제추진단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명은 2022

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
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의2(온라인경제추진단) ①</u> <u>「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u> <u>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u> <u>항에 따라 차관 밑에 온라인경</u> <u>제추진단장 1명을 둔다.</u> <u>②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 서기</u> <u>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u> <u>관으로 보한다.</u> <u>③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 다음</u> <u>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u> <u>다.</u> <u>1. 소상공인 온라인 국내외 진</u> <u>출 지원 기본계획 수립</u> <u>2. 소상공인 1인 미디어 플랫폼</u> <u>구축·운영</u> <u>3.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거점</u> <u>마련</u> <u>4.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역량</u> <u>강화 지원</u> <u>5.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채널</u> <u>별 입점 및 민간 채널 연계 지</u> <u>원</u> <u>6. 신기술 연계 소상공인 온라</u> <u>인 판로 비즈니스모델 개발·</u>

제11조(소상공인정책실) ① ~ ④
(생 략)

⑤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기본계획 수립
3. 소상공인 1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운영
4.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거점
마련
5.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채널
별 입점 지원
6.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 지원
7.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관련
통계·실태조사·분석, 성과
관리 및 점검

보급

7. 온·오프라인 연계 소상공인
판로 지원
8.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관련
통계·실태조사·분석, 성과
관리 및 점검
9. 우수 소상공인 제품 발굴 및
온라인 홍보·판매 지원

제11조(소상공인정책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현행과 같음)
2. 혁신형 소상공인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3. 혁신형 소상공인 경영기법의
발굴·공유 지원
4. 혁신형 소상공인 비즈니스모
델 개발·보급
5. 혁신형 소상공인 성과 확산

<삭 제>

<삭 제>

<u>8.</u> ~ <u>20.</u> (생략)	<u>6.</u> ~ <u>18.</u> (현행 제8호부터 제20호까지와 같음)
⑥ ~ ⑩ (생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원	· · <u>6</u>	· · <u>7</u>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 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39</u>	<u>38</u>	-1
· ·	· ·	· ·	